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지침

2012

보 건 복 지 부

질병관리본부

CONTENTS

●제1장 사업 개요 1

1. 배 경 ····· 1
2. 경 과 ····· 2
3. 목 적 ····· 2
4. 내 용 ····· 3
5. 법적 근거 ····· 4
6. 추진 절차 및 일정 ····· 5

●제2장 사업운영체계 6

1. 사업체계 ····· 6
2. 각 부처의 역할 ····· 7

●제3장 취학아동 학부모 역할 8

1. 미접종 취학아동 ····· 8
2. 예방접종을 받은 아동 ····· 8
3. 예방접종 금기로 인하여 접종을 받지 못하는 취학아동 ····· 9

●제4장 접종기관의 역할 10

1. 예방접종 미접종 취학아동 ····· 10
2. 예방접종기록 전산미등록 취학아동 ····· 10
3.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확인 ····· 11

●제5장 초등학교 역할 12

1. 취학예정 아동 학부모에 대한 홍보 ····· 12
2.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 12

CONTENTS

●제6장 시·군·구 역할 14

1. <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 발부 ····· 14
2. 홍보 및 교육 ····· 14
3. 미접종 취학아동 접종지도 ····· 15
4. 폐업한 관내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시행한 경우 ····· 15
5.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취합과 접종기록의 전산등록 ····· 16

●제7장 시·도 역할 17

1. 시·군·구 예방접종 확인사업 지도·감독 ····· 17
2.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 17

●별첨 Ⅰ 주요 서식 18

[서식1] <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 서식 ····· 19
[서식2]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서식 ····· 21
[서식3] <예방접종증명서> 서식 ····· 22
[서식4]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현황 보고 서식 ····· 23

●별첨 Ⅱ 자주 물어보는 질문(FAQ) 24

●별첨 Ⅲ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전산 발급 방법 29

●별첨 Ⅳ 폐업의료기관 접종내역 전산등록 방법 33

●별첨 Ⅴ 예방접종 접종 정보 37

[별첨4-1] 소아용 표준예방접종일정표 ····· 38
[별첨4-2] 각 백신의 최소 접종 간격 ····· 40

제1장 사업 개요

1 배 경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유행 차단 및 퇴치를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유지가 필요함

○ 취학아동 예방접종력 확인사업은 예방접종률 향상 및 유지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제출, 접종확인 등의 어려움으로 2001년부터 2차 홍역 예방접종에 한해 실시중이며, 그 결과 95% 이상의 예방접종률을 유지함

※ 추가 예방접종률: DTaP 5차 20.0%, 폴리오 4차 35.2%(전국예방접종률 조사 및 체계개발, 서울대.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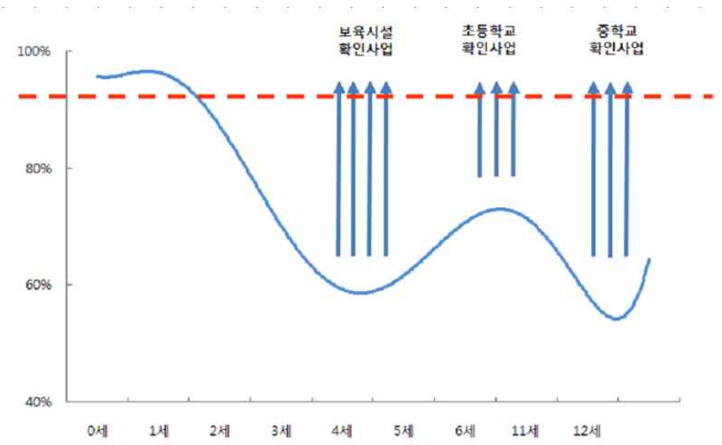

○ 2012년 필수 예방접종 지원 확대, 교육과학기술부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기록 공유 등으로 확인사업을 위한 전산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확인사업 대상 접종을 만 4~6세 추가예방접종으로 확대 가능함

– 기존 1종(MMR)에 대해 모든 보호자가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 확인하였으나, 예방접종 전산기록이 없는 경우만 예방접종증명서 제출하도록 개선하고, 4종(DTaP, IPV, MMR, 일본뇌염)으로 확대

2 경 과

○ 관련 법령 정비

–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제도 도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학교보건법 제10조

– 병·의원의 접종기록 보고 제도 도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 시행('01년~)

※ 홍역 예방접종률 95%이상 유지

○ 예방접종 기록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 예방접종 기록을 전산으로 등록하는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02년~)

※ '12년 입학 대상자인 '05년생 전산등록자 수는 425,559명 임(전산등록률 97.8%)

※ '11년 취학아동의 추가접종 전산등록률은 MMR(2) 81.7%, IPV(4) 69.9%, DTaP(5) 68.2%, 일본뇌염 61.9% 임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예방접종기록 공유를 위한 전산 연계 구축(~'11.12월)

※ 질병관리본부는 2월 29일까지의 예방접종 전산등록내역을 교육과학기술부 NEIS으로 전송하고, 보건교사는 입학대상자의 예방접종내역을 NEIS에서 직접 확인 가능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시행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지원

※ 2012년 필수예방접종 백신비 및 시행료 중 1만원 지원(본인부담금 5천원/회)

3 목 적

○ 만 4~6세 어린이의 추가 예방접종률(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4차(또는 생백신 3차))을 취학아동에게 확인하고,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을 95% 이상 유지

4 내 용

4.1 사업 대상

○ 2012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2005. 1. 1~2005. 12. 31 출생자와 취학의무예정자)

4.2 사업 대상 예방접종

○ 만 4-6세 추가접종 4종: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3차)

4.3 사업 내용

○ **(시장·군수·구청장)** <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서식1) 발부

-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에 대한 안내문 및 통지서 발부

○ **(학부모)** 초등학교 입학 전(2월 29일 까지) 예방접종내역의 전산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접종누락자는 접종 완료

- 접종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는 접종기관에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 또는 서식3)를 발급받아 입학 전(2월 29일 까지) 관할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거나, 입학 시 학교에 제출

○ **(학교장)** 입학생의 예방접종 여부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확인하고, 전산미등록자에 대해 접종지도

- 입학생이 3월 1일 이후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NEIS에서 접종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호자에게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 또는 서식3)를 제출받아 접종여부 확인
- 접종제외대상자는 보호자에게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를 제출 받아 확인('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중 '예방접종 대상 제외 확인')
- 학교별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현황>(서식4), 취합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 또는 서식3)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6월20일까지 제출)

○ **(보건소)** 학교에서 제출한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현황>(서식4)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사이트에 등록

-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현황>(서식4)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사이트(http://ir.cdc.go.kr)의 [예방접종 현황 등록/수정]에 등록
- 제출된 예방접종증명서는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사이트(http://ir.cdc.go.kr)의 [증명서 등록/수정]에 전산등록

※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시스템 사용 지침 참조

5 법적 근거

○ 예방접종시행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예방접종확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이하 "정기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기록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14]

6 추진 절차 및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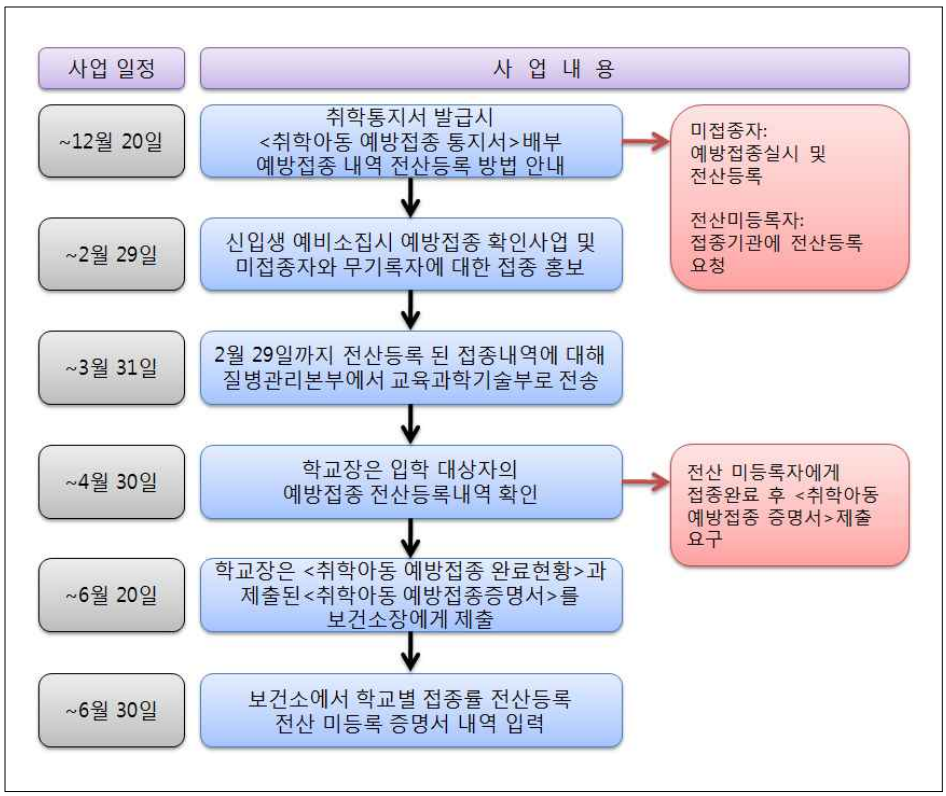
사업 일정
사 업 내 용
~12월 20일
취학통지서 발급시
<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배부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 방법 안내
미접종자:
예방접종실시 및
전산등록
전산미등록자:
접종기관에 전산등록
요청
~2월 29일
신입생 예비소집시 예방접종 확인사업 및
미접종자와 무기록자에 대한 접종 홍보
~3월 31일
2월 29일까지 전산등록 된 접종내역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전송
~4월 30일
학교장은 입학 대상자의
예방접종 전산등록내역 확인
전산 미등록자에게
접종완료 후 <취학아동
예방접종 증명서>제출
요구
~6월 20일
학교장은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현황>과
제출된<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
~6월 30일
보건소에서 학교별 접종률 전산등록
전산 미등록 증명서 내역 입력

제2장 사업운영체계

1 사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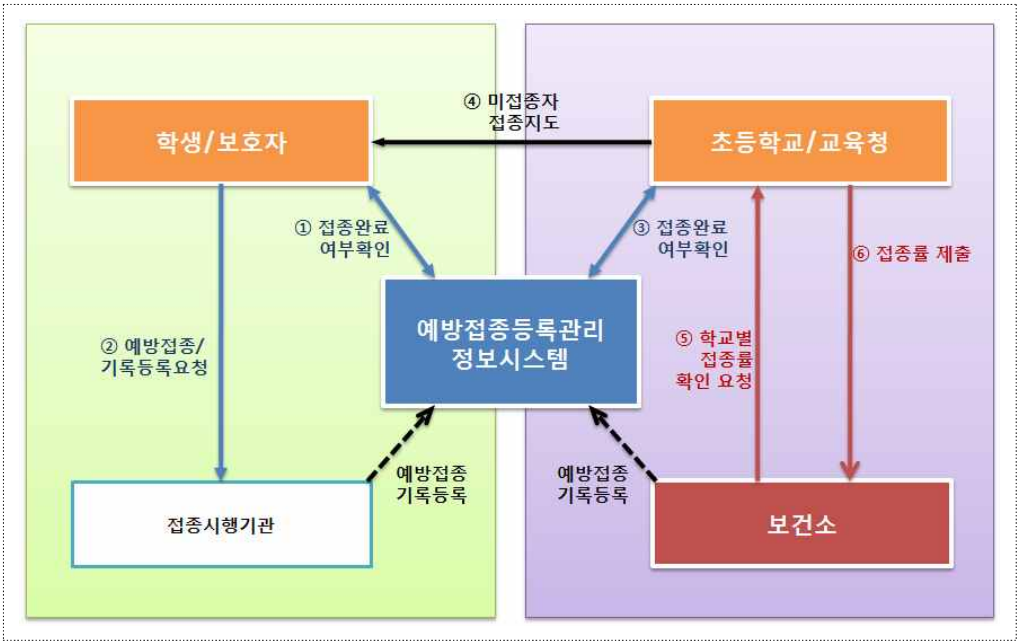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사업체계도>

① 보호자는 초등학교 입학 전(2월 29일 까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 회원 가입 후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

② 예방접종 내역이 등록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실시

- 단, 실제 예방접종을 받았으나 단순히 접종기록만 누락된 경우 접종받은 의료기관을 통해 누락기록을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 요청

※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③ 학교장은 입학 대상자의 예방접종내역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확인('12.4월)

④ 학교장은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완료 권유 및 예방접종증명서 확인(~'12.5월)

- 학교 입학 후(3월 1일 이후) 완료된 예방접종 내역에 대해서는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 또는 서식3)를 제출받아 확인

※ 단, 우리부로 미접종자 정보를 환류하는 경우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상의 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 통지예정으로, 이 경우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불필요

- NEIS에서 접종내역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실제 접종을 받은 경우는 보호자로부터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 또는 서식3)를 제출받아 확인

⑤ 시·군·구청장(보건소장)은 학교장에게 6월 20일까지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 현황>(서식4)을 제출하도록 요청

⑥ 학교장은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장)에게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현황>(서식4), 취합된<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 또는 서식3) 제출(~6월 20일)

⑦ 보건소는 취합된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현황>(서식4),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 또는 서식3)를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사이트(http://ir.cdc.go.kr)에 전산등록(~6월 30일)

2 각 부처의 역할

2.1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사업 지침 작성 및 배포

○ 사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전산연계 구축 및 유지

2.2 교육과학기술부

가. 교육과학기술부 및 관할 교육청

○ 질병관리본부와의 전산연계 구축 및 유지

○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송한 예방접종 내역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및 유지

○ 사업 안내 등 지역사회 홍보

○ 학교별 접종 현황 모니터링

2.3 행정안전부

○ 읍·면·동에서 취학통지서 발급 시 <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서식1) 배부

○ 반상회보, 소식지, 지역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독려

제3장 취학아동 학부모 역할

1 미접종 취학아동

➜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 완료

○ 보호자는 2월 29일까지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자녀의 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예방접종 내역 확인
※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예방접종 기록의 전산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 또는 서식3)를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에 제출

○ **단, 입학 후(3월 1일 이후)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경우**는 학교에서 예방접종력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 또는 서식3) 또는 **인터넷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 인터넷 <예방접종증명서>는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가능

2 예방접종을 받은 아동

➜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확인

○ **전산등록 확인방법**: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스마트폰 앱, 인터넷 <예방접종증명서>, 관할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회원가입 후 "우리아기등록하기" 메뉴에서 자녀를 등록하고 예방접종내역 확인

○ 접종내역이 전산등록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2월 29일까지 전산등록 요청**하고, 전산등록이 안되는 경우는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 또는 서식3)를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에 제출

○ **단, 입학 후(3월 1일 이후) 전산등록을 완료하는 경우**는 학교에서 예방접종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 또는 서식3) 또는 **인터넷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3 예방접종 금기로 인하여 접종을 받지 못하는 취학아동

➜ 의료기관에서 접종절대금기 사유를 확인받아 학교에 제출

○ 의료기관에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의 '접종제외 대상 백신 종류'와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확인'란의 사유를 작성하거나 진단서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

–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확인: 아나필락시스 또는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면역 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등

※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 서식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의 [우리아이 예방접종관리]–[관련서식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4장 접종기관의 역할

1 예방접종 미접종 취학아동

➜ 예방접종 시행 후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접종내역 등록

○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는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http://ir.cdc.go.kr)에 접종내역 등록

○ 예방접종기록이 불확실하여 접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미접종자로 간주하여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예방접종 시행 후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접종내역 등록

○ **학교 입학 후(3월 1일 이후)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접종내역을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 또는 서식3)를 발급

※ 별첨 Ⅲ.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전산 발급 방법 참조(p.29)

※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 서식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1. 예방접종 행정지원 사이트(http://ir.cdc.go.kr)의 [자료실]-[각종 서식 다운로드]
2.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의 [우리아이 예방접종관리]-[관련서식 다운로드]

2 예방접종기록 전산미등록 취학아동

➜ 예방접종 내역 확인 후 전산등록

○ 진료기록을 통해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접종내역을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

○ **학교 입학 후(3월 1일 이후) 전산등록**을 하는 경우는 학교에서 직접 접종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전산등록 후 보호자에게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 또는 서식3) **를 발급**

※ 별첨 Ⅲ.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전산 발급 방법 참조(p.29)

3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확인

➜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에 예방접종 제외 대상 확인 또는 진단서 발급

○ **접종 금기사항**으로 인한 예방접종 제외자는 해당 내용을 <취학아동 예방접종 증명서>(서식2)에 기재하여 발급

○ **접종 지연**으로 인한 확인사업 대상 접종 생략 시 해당 내용을 <취학아동 예방접종 증명서>(서식2)에 기재하여 발급

※ 지연접종으로 인해 접종이 생략되는 경우

○ DTaP 3차가 만 4세 이후에 접종된 경우에는 4차와 5차 접종 생략
○ DTaP 4차가 만 4세 이후에 접종된 경우에는 5차 접종 생략
○ IPV(폴리오) 3차가 만 4세 이후에 접종된 경우에는 4차 접종 생략
○ 일본뇌염(사백신) 3차가 만 4세 이후에 접종된 경우에는 4차 접종 생략

※ 예방접종실시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7호, 2011.7.1),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2011) 참조

제5장 초등학교 역할

1 취학예정 아동 학부모에 대한 홍보

○ 예비소집 시 가정통신문을 통해 예방접종 실시 완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접종을 완료하도록 홍보

○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의 필요성과 편의성 홍보

– 취학아동이 2월 29일까지 예방접종 및 전산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안내

※ 3월1일 이후 접종하거나 전산등록을 완료한 경우 NEIS를 통해 예방접종내역 확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2월29일까지 전산등록이 완료되도록 안내(3월1일 이후 접종 또는 전산등록 내역은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 또는 서식3)를 제출해야함)

◈ 학부모 안내사항

○ **(미접종자)** 예방접종 완료 후 전산등록하도록 안내

○ **(전산미등록자)** 실제 접종을 받았으나 단순히 접종기록만 전산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보호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에게 전산등록을 요청하거나,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 또는 서식3)를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에 제출

2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완료여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확인

– NEIS에서 등록된 접종내역을 확인 후 미등록자에 대한 접종완료 권고

– **입학 후(3월 1일 이후) 접종을 완료하거나 전산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전산 확인이 불가능하며, 보건교사는 보호자가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 또는 서식3)를 제출하도록 안내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월 29일까지 전산등록 된 접종내역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로 전송

※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 서식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의 [우리아이 예방접종관리]–[관련서식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검토 및 접종지도

– 제출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 또는 서식3)의 내역을 검토하여 접종 완료 여부 확인

– 접종기록 누락 시 접종을 완료하도록 접종지도

– 지연접종으로 인한 접종 생략 대상자 확인

※ 지연접종으로 인해 접종이 생략되는 경우

○ DTaP 3차가 만 4세 이후에 접종된 경우에는 4차와 5차 접종 생략
○ DTaP 4차가 만 4세 이후에 접종된 경우에는 5차 접종 생략
○ IPV(폴리오) 3차가 만 4세 이후에 접종된 경우에는 4차 접종 생략
○ 일본뇌염(사백신) 3차가 만 4세 이후에 접종된 경우에는 4차 접종 생략

○ 학교별 접종완료여부 확인 결과 보고

– 학교장은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현황>(서식4)을 작성 후 6월 20일 까지 보건소에 제출

– 학교장은 보호자가 제출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 또는 서식3)를 취합하여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현황>(서식4) 제출 시 함께 제출

제6장 시·군·구 역할

1 <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 발부3

○ 읍·면·동 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 발부시 <취학아동 예방접종통지서>(서식1)를 동봉하여 배포(관인 필히 포함)

2 홍보 및 교육

2.1 취학아동 학부모에 대한 홍보

○ 홍보 자료 배부
- 보건소, 보건지소, 읍·면·동사무소 등에 배포
- 관내 민간의료기관, 초등학교에 배포

○ 시정 소식지, 유선 방송 등을 통한 홍보

○ 예방접종 전산등록의 중요성 홍보

2.2 의료기관 및 의사회 홍보

○ 의료기관에 사업안내 공문 및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지침> 발송
- 대상 :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관내 모든 의료기관

○ 예방접종 확인사업에 대한 홍보물, 관련 서식 제공

○ 지역의사회를 통한 사업 홍보

○ 예방접종 전산등록 독려

2.3 학교 홍보

○ 보건교사 간담회 개최(교육청과 협의)

○ 사업지침, 홍보물, 관련 서식 제공

○ 전산미등록자 관리 및 접종률 향상 방안 협의

2.4 보건소 직원 교육

○ 교육대상 : 관리의사, 공중보건의사, 예방접종 담당자(보건지소·진료소 포함)

○ 교육내용

–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확인사업의 중요성 및 개요

–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전산등록 내역 확인 방법

–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의 접종내역 전산등록 방법

3 미접종 취학아동 접종지도

○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접종내역 등록

○ 예방접종기록이 불확실하여 접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미접종자로 간주하여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예방접종 시행 후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접종내역 등록

○ **학교 입학 후(3월 1일 이후)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경우**는 예방접종 완료 후 보호자에게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를 발급하여 입학 시 학교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

※ 별첨 III.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전산 발급 방법 참조(p.29)

4 폐업한 관내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시행한 경우

○ 폐업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는 취학아동 관할 보건소 또는 학부모의 의무기록 확인 요청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여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폐업의료기관이나 관할 보건소에서 의무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폐업사실 확인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수첩 내역을 기반으로 확인대상 접종에 한해 전산등록

※ **반드시 의료기관 폐업이 확인**되고 접종일, 접종기관, 접종기관날인(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산등록

※ 별첨 IV. 폐업의료기관 접종내역 전산등록 방법 참조(p.33)

○ **학교 입학 후(3월 1일 이후) 전산등록**을 하는 경우는 학교에서 직접 접종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전산등록 후 보호자에게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를 발급**

※ 별첨 III.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전산 발급 방법 참조(p.29)

5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취합과 접종기록의 전산등록

5.1 학교별 예방접종 완료현황 확인

○ 보건소장은 6월 2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

※ 서식4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현황>(p.23)

○ 제출받은 예방접종 완료 현황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사이트에 6월 30일까지 입력

※ 예방접종 완료 현황 입력 방법은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시스템 사용 지침” 참조

5.2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취합과 전산등록

○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제출자의 접종내역 전산등록여부 확인 및 전산등록

– 예방접종 확인사업 사이트(http://ir.cdc.go.kr)의 [증명서 등록/조회]를 통해 전산등록내역 확인 후 미등록 접종내역에 대해서는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 또는 서식3)에 기재된 접종내역을 전산등록

○ 제출받은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 또는 서식3)는 5년간 별도 보관

※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방법은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시스템 사용 지침” 참조

제7장 시·도 역할

1 시·군·구 예방접종 확인사업 지도·감독

○ 시·군·구 담당자 교육

○ 예방접종기록 보관 및 관리 철저

– 시·군·구 예방접종 기록 관리 업무 지도·감독

○ 시·군·구별 예방접종 완료현황 모니터링

※ 예방접종 완료현황 모니터링 방법은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시스템 사용 지침” 참조

2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 지역 의사회 및 의료기관과 사업 협조체계 유지

○ 시·도 교육청과의 사업 협조체계 유지

별첨 Ⅰ. 주요서식

[서식1] <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 서식

(앞면)

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

취학아동 성명		취학아동 주민등록번호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병을 95%이상 예방할 수 있고, 감염이 될 경우에도 심각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기에 받는 기초 예방접종률은 비교적 높지만, 감염병에 대한 방어면역이 점차 약해지고, 또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아동기(만 4세 이후)에는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감염병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추가 예방접종을 제때 받지 않으면 면역력이 감소해 감염병 발병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취학아동은 본인의 건강**은 물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빠트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012년 취학을 앞둔 어린이의 보호자께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입학 전(2012년 2월 29일)까지 만 4-6세에 받아야하는 추가 예방접종(①DTaP 5차 ②폴리오 4차 ③MMR 2차 ④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3차))**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가입 후 ①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내 "예방접종 내역조회" 기능, ②스마트폰 앱, ③인터넷 <예방접종증명서>('민원24'(http://www.minwon.go.kr, 발급비용 무료)에서 발급), ④관할 보건소(방문 또는 전화문의), ⑤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접종이 누락된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전산등록을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뒷면)

예방접종 전산등록 확인방법 안내

①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가입하고, 자녀 등록하기

- 취학아동의 보호자는 먼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 회원가입 합니다.
- 회원가입 후 "우리아기등록하기"를 통해 대상 자녀를 등록합니다.

② 접종내역 확인하기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의 "예방접종 내역조회"를 선택하시면 등록된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용 앱(예방접종도우미)의 "우리아기 아기수첩"을 선택하시면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와 동일하게 접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원24'(http://www.minwon.go.kr, 발급비용 무료)에서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 가입된 보호자가 등록된 자녀의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24'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절차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③ 접종내역이 없는 경우, 접종을 완료하거나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접종이 누락된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내역에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접종 기관에서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사업 안내

정부는 2009년 3월부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생아부터 만12세까지 국가필수 예방접종(10종백신)의 의료기관 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지역별로 차이가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참조)

<지원대상 예방접종>

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청소년 및 성인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Tdap)

[서식2]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서식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학학교	
주소			

접종명	접종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확인
접종제외 대상 백신 종류: ☐ 아나필락시스 또는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 기타사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료기관장 직인

[서식3] <예방접종증명서> 서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예방접종증명서

1. 성 명 : (성별:)
2. 생년월일 :
3. 주 소 :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료기관장

직인

접종명	접종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210㎜×297㎜(보존용지(2종) 70g/㎡)

[서식4]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현황 보고 서식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현황

교육청명: 교육청
작성자명:
작 성 일: 년 월 일

학교명	전체 학생 수	전산등록 현황									
		완전접종률[1]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사4차 또는 생3차)	
		접종자수	접종률[2]	접종자수	접종률[2]	접종자수	접종률[2]	접종자수	접종률[2]	접종자수	접종률[2]
전체											

1) 완전접종률: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3차)를 모두 접종 완료한 취학아동의 분율
2) 접종률 = (해당 접종 접종자수/전체 학생수) × 100

별첨 Ⅱ. 자주 물어보는 질문(FAQ)

Q1.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으로'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만 4~6세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2012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시 **만 4~6세 추가 예방접종 4종***에 대한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자녀의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후 **접종이 누락된 경우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 후 **전산등록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예방접종 4종 :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3차)

※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절차>

①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 회원가입 후 '예방접종 내역조회'에서 확인

② 스마트폰 앱 '예방접종도우미'

③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인터넷 <예방접종증명서> 무료 발급

④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문의

⑤ 접종 받은 의료기관 방문 또는 전화문의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 보호자께서 직접 전산등록한 접종내역(회색으로 표기)은 학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의료기관 기록은 파란색 표기)

※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Q2. 2012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나요?

A2. 금년부터는 온라인 예방접종증명으로 간소화됩니다. 따라서, 확인대상이 되는 예방접종 기록(4건)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에서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 직접 입력한 사항은 전산등록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교에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접종시행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3.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예방접종 완료여부만 확인하면 되나요?

A3. 학교에서는 **2012년 2월 29일까지** 전산등록이 완료된 접종내역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 후(3월1일 이후)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학교에서 전산등록내역 확인이 불가**하므로 **접종시행기관으로부터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4. 아이의 접종기록을 확인했는데 MMR 1차 및 2차 모두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MMR의 경우 총 2회의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르면 1차 접종을 생후 12~15개월, 2차 접종은 만 4~6세에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1회의 접종도 받지 않았다면 **최소 접종 간격 4주를 유지하여 2회의 접종을 실시**하면 됩니다.

Q5. 아이의 접종기록을 확인했는데 DTaP 4차부터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DTaP 4차 접종은 생후 15~18개월에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DTaP 4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동이 만 7세(84개월) 이상인 경우 반드시 DTaP 백신이 아닌 Td 백신으로 접종받으시고, 이 경우 DTaP 5차 접종은 생략하며,** 향후 만 11~12세에 Tdap 또는 Td로 추가접종을 받으시면 됩니다.

※ 이 경우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양식에 DTaP 5차 접종 제외 사유를 접종시행 기관에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6. 아이의 접종기록을 확인했는데 IPV 3차부터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IPV 3차 접종은 생후 6개월, IPV 4차는 만 4~6세에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IPV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완료하시고, 이 경우 만 4~6세 받도록 권고하고 있는 IPV 4차 접종은 필요하지 않아 생략합니다.**

※ 이 경우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양식에 IPV 4차 접종 제외 사유를 접종시행 기관에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7. 아이의 접종기록을 확인했는데 일본뇌염(사백신) 3차부터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일본뇌염(사백신)은 생후 12~23개월에 7~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12개월 후 3차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완료하시고, 이 경우 만 6세에 받도록 권고하고 있는 4차 접종은 생략하며** 향후 만 12세에 추가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 이 경우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양식에 일본뇌염 4차 접종 제외 사유를 접종시행 기관에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8. 아기수첩에는 접종내역이 있는데 전산등록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확인해주세요~!

A8. 접종은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에서 접종내역을 전산등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접종내역에 대한 전산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을 거부할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건소에 등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9. 아기수첩에는 접종내역이 있는데 전산등록은 되어있지 않고 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은 폐업상태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①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거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 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우선, 폐업한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로 이관된 진료기록부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만일,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예방접종수첩을 지참 후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수첩을 근거로 전산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반드시 의료기관 폐업이 확인되고, 접종일자, 접종기관확인(도장 또는 날인), 접종기관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10. 외국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접종기록의 전산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0. 외국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접종시행기관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은(팩스 등을 이용) 후 보건소로 접종기록 전산등록을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Q11. 예방접종은 완료하였으나 의료기관에서 과거의 접종기록은 전산등록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1. 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학교에 입학한 이후(3월 1일 이후)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13.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을 다운받았는데 로그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13. 모바일 앱에서는 회원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앱을 사용하시기 전에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 PC버전)에서 회원가입 하신 후 자녀를 등록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Ⅲ.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전산 발급 방법 (의료기관, 보건소 기능)

■ 예방접종 행정지원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한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대상 접종 내역에 대해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2) 서식으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출력 가능

① 행정지원사이트 접속 후 ID/PW 로그인
② “인터넷 예방접종 등록시스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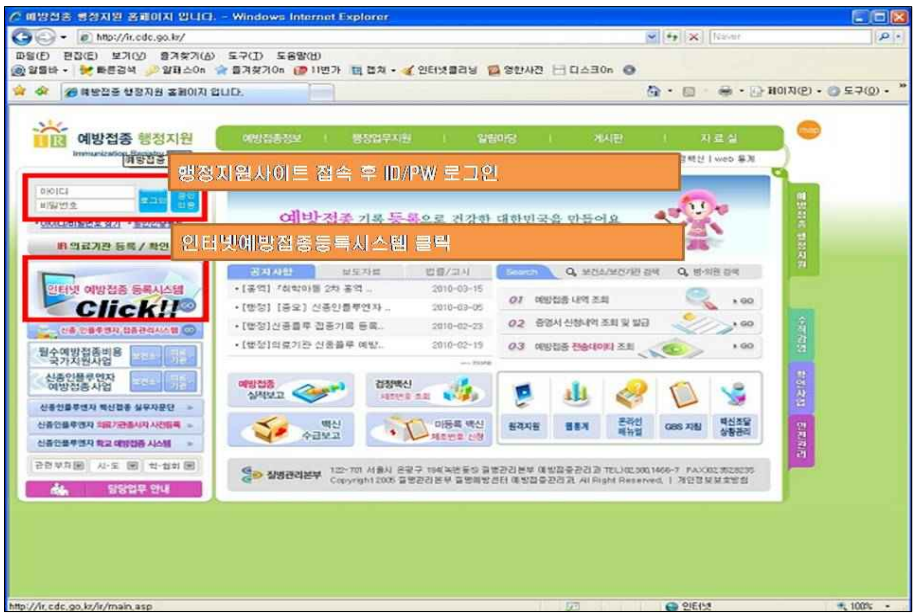

■ 예방접종 내역 증명서 발급

① 예방접종 등록시스템 화면 메뉴에서 [증명서발급] 선택

② [취학아동 증명서] 선택

③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접종내역 검색

④ 입학 초등학교명을 기입하고, 발급하고자 하는 예방접종명을 선택 후 증명서 발급

※ 예방접종 행정지원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확인사업 대상 접종내역에 한해서 증명서 발급 가능

■ 접종 제외 사유 발급

① 예방접종 등록시스템 화면 메뉴에서 [증명서발급] 선택

② [취학아동 증명서] 선택

③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접종내역 검색

④ 입학 초등학교명을 기입하고, 접종제외 대상 백신 종류 기입, 해당 제외사유 선택 후 증명서 발급

※ <u>기타사유 선택 시, 반드시 상세내용을 기입하여야 함</u>

■ 출력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에 발급 의료기관의 직인 날인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성 명	[redacted]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입학학교	[redacted]
주 소	[redacted]		

접종명	접종 차수	접종일자	접종기관
DTaP	5차(추가)	2011-11-30	[redacted]
폴리오(주사)	4차(추가)	2011-11-23	[redacted]
MMR	2차	2011-01-01	[redacted]
일본뇌염(사백신)	4차(추가)	2011-11-22	[redacted]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확인

접종제외 대상 백신종류 :

※ 고열이나 면역글로불린 투여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알레르기 등은 금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아나필락시스 또는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 기타사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2 년 1 월 10 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기관장) 직인

별첨 Ⅳ. 폐업의료기관 접종내역 전산등록 방법 (보건소 기능)

○ 폐업의료기관에서 접종한 내역을 접종기관으로 전산등록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음

① 해당 기관명을 조회하는 선택하는 방법

② 접종기관명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

① 해당 기관명을 조회하는 선택하는 방법

- 접종기관명을 검색하여 해당 기관을 선택(비고란에 “폐업기관”으로 표시)
- 해당 기관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입력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기관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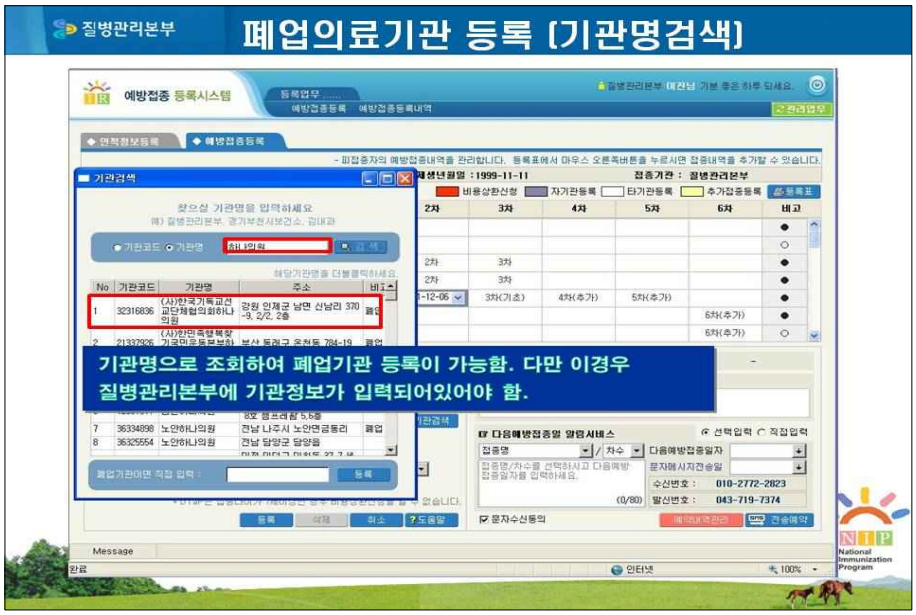

② 접종기관명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

– 해당 기관명을 직접 입력하여 접종기관명을 등록

※ 기관명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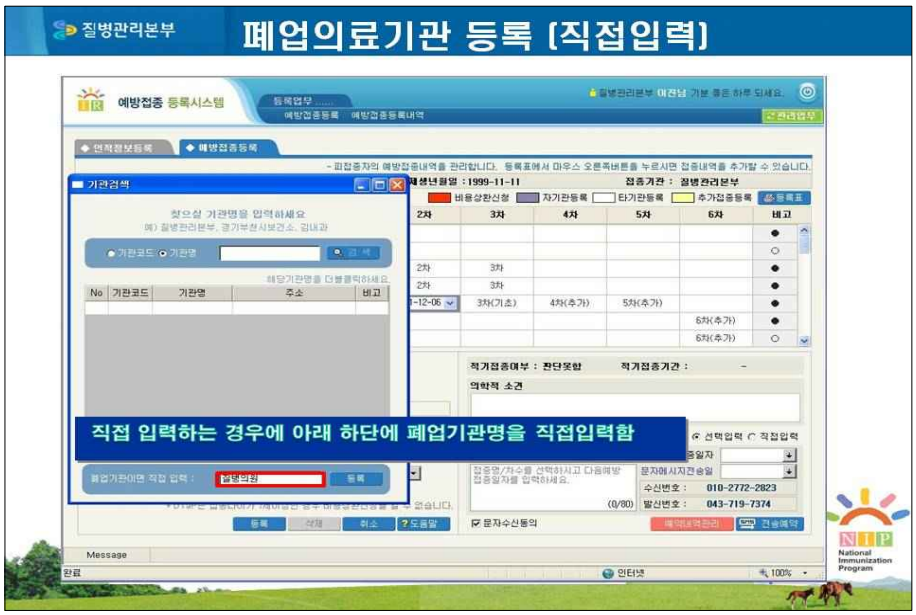

별첨 Ⅴ. 예방접종 정보

[별첨 4-1] 소아용 표준예방접종일정표

① **BCG** : 생후 4주 이내 접종

② **B형간염** : 임신부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경우에는 출생 후 12시간 이내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HBIG) 및 B형간염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고, 이후의 B형간염 접종일정은 출생 후 1개월 및 6개월에 2차, 3차 접종 실시

③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④ **Td / Tdap** : 만 11~12세에 Tdap 또는 Td로 추가접종 권장(단, Tdap은 2012년 이후 국가지원 예정)

⑤ **폴리오** : 3차 접종은 생후 6개월에 접종하나 18개월까지 접종 가능하며,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 생후 2, 4, 6개월, 만4~6세에 DTaP, IPV 백신 대신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초 3회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며, 생후 15~18개월에 접종하는 DTaP 백신은 제조사에 관계없이 선택하여 접종 가능

⑥ **홍역** : 유행 시 생후 6~11개월에 MMR 백신 접종이 가능하나 이 경우 생후 12개월 이후에 MMR 백신을 다시 접종

⑦ **일본뇌염(사백신)** : 생후 12~23개월 기간 중 7~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12개월 후 3차 접종 실시

⑧ **인플루엔자(사백신)** : 6개월~59개월 소아의 경우 매년 접종 실시. 이 경우 접종 첫 해에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 (단, 인플루엔자 접종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경우 그 다음해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⑨ **인플루엔자(생백신)** : 24개월 이상부터 접종 가능하며, 24개월~59개월 소아 중 인플루엔자 접종 첫 해에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단, 인플루엔자 접종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경우 그 다음해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⑩ **장티푸스** :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거나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등 위험요인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

⑪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뇌수막염(Hib)** : 생후 2개월~5세 미만 모든 소아를 대상으로 접종, 5세 이상의 경우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 접종(겸상적혈구증, 비장 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 백혈병, HIV 감염, 체액면역 결핍 등)

⑫ **폐렴구균(단백결합)** : 생후 2개월~5세 미만 모든 소아를 대상으로 접종. 10가 단백결합 백신은 2세까지 접종 가능하며 13가 단백결합 백신과 교차접종을 권장하지 않음

⑬ **폐렴구균(다당질)** : 2세 이상의 폐구균 감염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충분한 상담 필요

※ 폐구균 감염의 고위험군

- 면역 기능이 저하된 소아 : HIV 감염증, 만성 신부전과 신증후군, 면역억제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질환(악성 종양, 백혈병, 림프종, 호치킨병) 혹은 고형 장기 이식,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소아 : 겸상구 빈혈 혹은 헤모글로빈증, 무비증 혹은 비장 기능장애
- 면역 기능은 정상이나 다음과 같은 질환을 가진 소아 : 만성 심장질환, 만성 폐질환, 당뇨병,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 이식 상태

⑭ **일본뇌염(생백신)** : 생후 12~23개월에 1차 접종하고 12개월 후 2차 접종 실시

⑮ **A형간염** : 생후 12개월 이후에 1차 접종하고 6~18개월 후 추가접종(백신에 따라 접종 시기가 다름)

⑯ **인유두종바이러스** : 인유두종바이러스 2가와 4가 백신은 교차접종을 권장하지 않음

[별첨 4-2] 각 백신의 최소 접종 간격

질 병	백 신	접종 권장시기	최소 연령	다음 접종 간격	다음 접종 최소 접종 간격
B형간염	B형간염(1차)	출생시	출생시	1~4개월	4주
	B형간염(2차)	생후 1~2개월	생후 4주	2~17개월	8주
	B형간염(3차)[2]	생후 6~18개월	생후 24주	-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DTaP(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개월	4주
	DTaP(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6~12개월	6개월[3]
	DTaP(4차)	생후 15~18개월	생후 12개월	3년	6개월
	DTaP(5차)	만 4~6세	만 4세	-	-
폴리오	사백신(IPV, 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사백신(IPV, 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14개월	4주
	사백신(IPV, 3차)	생후 6~18개월	생후 14주	3~5년	6개월
	사백신(IPV, 4차)	만 4~6세	만 4세	-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1차)	생후 12~15개월[4]	생후 12개월	3~5년	4주
	MMR(2차)	만 4~6세	생후 13개월	-	-
일본뇌염	사백신(1차)	12~23개월	12개월	7~30일	7일
	사백신(2차)	12~23개월	12개월	12개월	6개월
	사백신(3차)	24~35개월	18개월	3~4년	2년
	사백신(4차)	만 6세	만 5세	6년	5년
	사백신(5차)	만 12세	만 11세	-	-
	생백신(1차)	12~23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생백신(2차)	24~35개월	24개월	3~4년	2년
	생백신(3차)	만 6세	만 5세	-	-
인플루엔자 사백신[5]	TIV	생후 6개월 이상	생후 6개월	1개월	4주
인플루엔자 생백신	LAIV	생후 24개월~49세	생후 24개월	1개월	4주
수두[6]	Varicella	생후 12~15개월	생후 12개월	4주[6]	4주[6]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뇌수막염 백신)	Hib(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Hib(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개월	4주
	Hib(3차)[7]	생후 6개월	생후 14주	6~9개월	8주
	Hib(4차)	생후 12~15개월	생후 12개월	-	-
폐렴구균	단백결합(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8주	4주
	단백결합(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8주	4주
	단백결합(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6개월	8주
	단백결합(4차)	생후 12~15개월	생후 12개월	-	-
	23가 다당(1차)	-	만 2세	5년[8]	5년
	23가 다당(2차)	-	만 7세[8]	-	-
A형간염	A형간염(1차)	생후 12~23개월	생후 12개월	6~18개월	6개월
	A형간염(2차)	생후 18개월	생후 18개월	-	-
성인용 디프테리아 파상풍	Td	만 11~12세	만 7세	10년	5년
성인용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Tdap	만 11세 이상	만 11세	-	-
로타바이러스[9]	1차	2개월	6주	2개월	4주
	2차	4개월	10주	2개월	4주
	3차	6개월	14주		
인유두종바이러스[10]	1차	만 11~12세	만 9세	2개월	4주
	2차	만 11~12세(+2개월)	만 9세(+4주)	4개월	12주
	3차	만 11~12세(+6개월)	만 9세(+24주)	-	-

1. 혼합 백신(combination vaccines) 사용이 가능하다. 허가받은 혼합 백신 사용이 각 성분의 개별 접종보다 선호된다(CDC. Combination vaccinces for childhood immunization: recommendations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nd the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MMWR Recomm Rep*. 1999;48(RR-5):1-15). 혼합 백신을 투여할 때 최소 연령은 각 성분 백신 투여 최소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이다. 혼합백신을 투여할 때 최소 접종간격은 각 성분 백신의 최소 접종간격 중 가장 큰 값이다.
2. B형간염 백신 3차 접종은 2차 접종 8주 이후에, 1차 접종 16주 이후에 접종하여야 한다. 또한 3차 접종은 생후 24주 이전에 해서는 안된다.
3. DTaP 3차 접종과 4차 접종 사이에 권장되는 최소 간격은 6개월 이상이다. 그러나 DTaP 3차 접종 4개월 후에 4차 접종을 하였으면, 4차 접종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홍역 유행이 있고,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서 발생하는 경우,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아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그러나 생후 12개월 이전에 접종하는 백신은 표준 접종일정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는다(CDC. Measles, mumps, and rubella-vaccine use and strategies for elimination of measles, rubella, and congenital rubella syndrome and control of mumps: recommendations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MMWR Recomm Rep*. 1998;47(RR-8):1-57).
5. 처음 백신을 접종받거나 이전에 1회의 접종력만 있는 6개월~9세 미만 소아의 경우, 4주 간격으로 2회의 불활성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권장된다. 이전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 6개월~9세 미만 소아와 9세 이상인 경우 매년 1회의 백신 접종으로 충분하다.
6. 12개월~13세 미만의 소아는 수두 백신 1회 접종으로 충분하다. 13세 이상인 경우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접종받아야 한다.
7. Polyribosylribitol phosphate-meningococcal outer membrane protein으로만 이루어진 백신(PRP-OMP)의 경우, 6개월째 투여할 필요가 없다.
8. 23가 다당질 백신 2차 접종은 중증 폐렴구균 감염증의 위험이 높은 경우와 폐렴구균 항체 역가의 급속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권장된다. 중증 폐렴구균 감염증의 위험이 높고 재접종 당시 10세 미만인 경우, 이전 접종 3년 후에 재접종을 고려할 수 있다(CDC. Prevention of pneumococcal disease: recommendations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MMWR Recomm Rep.* 1997;46(RR-8):1-24).
9. 로타바이러스의 초회 접종은 생후 6주에서 14주 6일까지 투여 되어야만 한다. 생후 15주 이상의 영아에게 투여되어서는 안된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생후 8개월 이상의 영아에게 투여되어서도 안된다. 1가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경우는 2회 접종하며 3차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10. 2가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10~25세의 여성에게 허가가 되어 있고 4가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9~26세의 남성 및 여성에게 허가가 되어 있다. 3차 접종의 최소 연령은 초회 접종의 최소 연령에 따라 다르며 1차 접종 및 3차 접종간의 최소 접종간격은 24주이다. 초회 접종 이후 최소 16주가 지나서 접종할 시에는 3차 접종은 반복할 필요 없다.

[자료 출처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General recommendations on immunization: recommendations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MMWR 2011;60 (No. RR-2). 36]

2012년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확인사업 지침

인 쇄	2012년
발 행	2012년
발 행 인	질병관리본부장 전병율
편 집 인	질병예방센터장 이덕형
편집참여인	예방접종관리과장 배근량
	이연경, 김성남, 오현경, 김행욱, 황인섭, 이진
편 집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예방접종관리과
주 소	(363-951)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관리본부
전 화	043) 719-7373~4
팩 스	043) 719-7379

이 책은 질병관리본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